

(제 6-6-1-1 호)

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의 30% 이상 변경

1.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이익변동내용(단위:천원)	당해사업연도	직전사업연도	증감금액	증감비율(%)	
- 경상이익	8,636,820,329	-7,822,460,100	16,459,280,429	210.4	
- 당기순이익	7,865,406,268	-7,042,079,417	14,907,485,685	211.7	
2. 재무현황(단위:천원)					
- 자산총계	354,091,997,367				
- 부채총계	265,456,798,505				
- 자본총계	88,635,198,862				
- 자본금	47,964,869,197				
- 자본총계/자본금 비율(%)	184.8				
3.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이익 변동 주요원인	발생손해액의 감소				
4.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	해당사항없음				
- 사외이사					참석(명)
참석여부					불참(명)
- 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				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			

<기재상의 주의>

주 1) 최근 사업연도 경상손익, 당기순손익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항목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(손익계정의 흑자전환 또는 적자전환 포함)한 사실의 확인 또는 결정이 있을 때 (「주주총회에서 결산안건에 대하여 승인할 때」) 신고한다.

주 2) 손익계정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해당란에 負(-)표시를 하고,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.

주 3) “증감금액”은 당해계정의 당해사업연도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부호를 함께 기재한다.

예 1) 당해사업연도 경상이익 1,000 원, 직전사업연도 경상이익 500 원인 경우 증감금액은 「1,000 원 - 500 원 = 500 원」

예 2) 당해사업연도 경상이익 -1,000 원, 직전사업연도 경상이익 500 원인 경우 증감금액은 「-1,000 원 - 500 원 = -1,500 원」

예 3) 당해사업연도 경상이익 1,000 원, 직전사업연도 경상이익 -500 원인 경우 증감금액은 「1,000 원 - (-500 원) = 1,500 원」

주 4) “증감비율”은 「(증감금액 ÷ 직전사업연도금액) × 100」의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되, 감소의 경우 負(-)표시를 하여 기재한다.

주 5) 「자본총계/자본금비율」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.

주 6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
주 7) 당해 신고내용이 기 공시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“관련공시”란에 그 제목 및 일자 등 관련사항을 기재한다.

(제 6-7-8-1 호)

감사보고서 제출

1. 외부감사인명		삼정회계법인	
2. 감사대상기간		2010년 4월 1일 ~ 2011년 3월 31일	
3. 감사보고서 수령일		2011년 6월 25일	
4. 감사의견	당해 사업연도	적정	O
		한정	
		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	
		부적정	
		의견거절	
	직전 사업연도	적정	O
		한정	
		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	
		부적정	
		의견거절	
5. 자본금 잠식 여부	당해 사업연도	전액잠식	
		50%이상 잠식	
		50%미만 잠식	
		해당사항 없음	
	직전 사업연도	전액잠식	
		50%이상 잠식	
		50%미만 잠식	
		해당사항 없음	
6. 기타			
※ 외부감사인이 감사종료후 당해법인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당해법인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.			

< 기재상의 주의 >

주 1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

주 2) "감사의견"란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을 "적정", "한정", "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", "부적정", "의견거절"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고,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타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은 "기타"란에 요약하여 기재

주 3) "자본금 잠식여부"란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"전액잠식", "50%이상 잠식", "50%미만 잠식", "해당사항 없음"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고, 증권거래법 제 186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자본금 전액잠식(50%이상 잠식 포함)에 해당하는 사실을 해소할 예정이거나 이를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"기타"란에 요약하여 기재